

2021년 제6차 이사회 의사록

I 회의 개요

1. 일시 및 장소

- 일시: 2021. 10. 12.(화) 14:00 ~ 17:30
- 장소: 72동 415호(법학전문대학원 교수회의실)

2. 참석현황

- 참석이사: 전수안(이사장), 최창원, 권오규, 지은희, 성기학, 오세정(총장), 여정성(교육부총장), 이원우(기획부총장), 한호성, 김병섭, 박현애 (이상 11명)
- 불참이사: 정종철(교육부 차관), 안도걸(기획재정부 제2차관), 이기형, 류근관 (이상 4명)
- 참석감사: 마광열, 윤현철 (이상 2명)
- 배 석: 김용진 기획처장, 김은미 교무처장, 장기발전계획위원회 비전분과 김의영 연구책임자, 김준기 재정분과위원장 (이상 4명)

3. 회의안건

보고사항

- 제1호. 장기발전계획위원회 비전분과 논의 내용
- 제2호. 장기발전계획위원회 재정분과 논의 내용

추진사항

- 제1호. 서울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(안)(휴학)

심의·의결사항

- 제1호. 2020회계연도 서울대학교 종합재무제표(안)
- 제2호.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이사 선임(안)

간 서명	이사장 전수안 (인)	이사 최창원 (인)	이사 박현애 (인)
------	-------------	------------	------------

□ 논의사항

제1호. 이사 후보군 추천

□ 기타사항

제1호. 다음 이사회 개최 시기

II 회의 내용

1. 개회

- 전수안 이사장이 성원을 확인한 후 오후 2시에 이사회 개회를 선언함
- 김용진 기획처장이 전차 이사회 의사록을 보고하고, 전수안 이사장이 이사들의 이견 없음을 확인한 후 원안대로 접수함
- 김용진 기획처장이 2021년 제1차 이사회 운영소위원회 논의 결과를 보고함

2. 보고사항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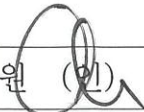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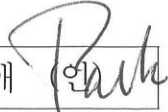
제1호. 장기발전계획위원회 비전분과 논의 내용

□ 주요내용

- 김용진 기획처장이 관련 경과를 보고하고, 김의영 연구책임자가 장기발전 계획위원회 비전분과 주요 논의 의제(미래 환경변화와 당면 현안, 위기와 반성, 2040 비전과 발전방향, 전략과제 등)에 대해 보고함

제2호. 장기발전계획위원회 재정분과 논의 내용

□ 주요내용

간 서명	이사장 전수안 	이사 최창원 (인) 	이사 박현애 (인) 
------	---	---	--

- 김용진 기획처장이 관련 경과를 보고하고, 김준기 분과위원장이 장기발전 계획위원회 재정분과 주요 논의 의제(향후 재정 전망, 해외 우수 대학과의 비교, 수입과 지출, 재정관리 등)에 대해 보고함

3. 추진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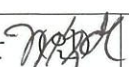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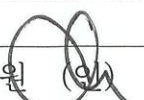

제1호. 서울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(안)(휴학)

□ 주요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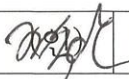


- 학년도 및 학기를 학위과정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는 근거 명시(안 제 49조제1항 및 제2항)
- 휴학기간에 방학을 포함, 1회에 신청 가능한 휴학기간에 연 단위 병기, 연 단위 휴학기간을 운영할 근거 명시 (안 제66조제3항)
- 휴학연한에 산입되지 않는 휴학기간에 연 단위 병기 (안 제66조제5항)

□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비고
<p>제49조(학년도·학기) ①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. [개정 2015.2.6.]</p> <p>② 학기는 매 학년도 학사력으로 정한다.</p>	<p>제49조(학년도·학기) ①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. <u>다만, 학위 과정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.</u> [개정 2015.2.6., 2021.00.00.]</p> <p>② 학기는 <u>학위과정에 따라 매 학년도 2개 학기 이상으로 정하며, 자세한 사항은 매 학년도 학사력으로 정한다.</u> [개정 2021.00.00.]</p>	<p>-학년도 및 학기를 다르게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명시</p>
<p>제66조(휴학) ①~② (생략)</p> <p>③ 휴학은 <u>2개 학기까지</u> 신청할 수 있다. 다만, 제110조제1항 및 제1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권고휴학은 4개 학기까지, 군휴학은 의무복무기간이 포함된 학기까지 신청할 수 있다.[개정 2018.6.15.]</p>	<p>제66조(휴학) ①~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휴학기간은 방학을 포함하며 1회에 1년 이내의 학기 단위로 신청할 수 있고 연 단위 휴학기간은 매 학년도 3개 학기 이상을 운영하는 학위과정에 적용된다.</u> 다만, 제110조제1항 및 제1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권고휴학은 4개 학기 또는 2년까지, 군휴학은 의무복무기</p>	<p>-휴학기간은 방학을 포함 1회에 신청 가능한 휴학기간 명시</p> <p>-학제가 다른 대학(원)을 고려하여 휴학기간에 연 단위 병기</p>

간 서명 | 이사장 전수안  | 이사 최창원  | 이사 박현애 

<p>④ 휴학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[개정 2014.12.19., 2018.6.15.]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학사과정 : 6개 학기. 다만, 약학대학은 8개 학기, 예과과정 및 편입학한 경우에는 각각 3개 학기로 하되, 의과대학 의학과 및 수의과대학 수의학과로 편입학한 경우와 약학대학으로 편입학 또는 전과한 경우는 6개 학기로 한다. [개정 2018.6.5., 2020.2.27.] [시행 2022.3.1.] 2. 석사과정 : 4개 학기. 다만, 치의학대학원, 의학대학원 및 법학전문대학원은 6개 학기, <u>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는 8개 학기로 한다.</u>[개정 2013. 4. 24., 2018. 6. 15][개정 2020. 3. 25.] 3. 박사과정 : 6개 학기. 다만, 법학전문대학원은 4개 학기로 한다. [개정 2018.6.15.] 4. 학사·석사통합과정 : 10개 학기. 다만, 치의학대학원 학사·전문석사통합과정은 학사과정 및 전문석사과정 각각 6개 학기로 한다. [신설 2018.6.15.] 5. 석사·박사통합과정 : 8개 학기[개정 2018.6.15.] 6. 의학대학원 및 치의학대학원 복합학위 과정 : 10개 학기[개정 2018.6.15.] <p>⑤ 다음 각 호의 휴학기간은 제4항 휴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군휴학 : 병역의무 기간이 포함된 학기. 다만, 종강일 후 입영 또는 복무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학기부터 휴학학기로 본다. 2. 창업휴학 : 2개 학기 3. 임신·출산휴학 : 2개 학기 	<p>간이 포함된 학기까지 신청할 수 있다.[개정 2018.6.15., <u>2021.00.00.</u>]</p> <p>④ 휴학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[개정 2014.12.19., 2018.6.15.]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학사과정 : 6개 학기 <u>또는 3년</u>. 다만, 약학대학은 8개 학기, 예과과정 및 편입학한 경우에는 각각 3개 학기로 하되, 의과대학 의학과 및 수의과대학 수의학과로 편입학한 경우와 약학대학으로 편입학 또는 전과한 경우는 6개 학기로 한다.[개정 2018.6.15., 2020.2.27.] [시행 2022.3.1.][<u>개정 2021.00.00.</u>] 2. 석사과정 : 4개 학기 <u>또는 2년</u>. 다만, 치의학대학원, 의학대학원 및 법학전문대학원은 6개 학기로 한다. [개정 2013. 4. 24., 2018. 6. 15., 2020. 3. 25., <u>2021.00.00.</u>] 3. 박사과정 : 6개 학기 <u>또는 3년</u>. 다만, 법학전문대학원은 4개 학기로 한다. [개정 2018.6.15., <u>2021.00.00.</u>] 4. 학사·석사통합과정 : 10개 학기 <u>또는 5년</u>. 다만, 치의학대학원 학사·전문석사통합과정은 학사과정 및 전문석사과정 각각 6개 학기로 한다. [신설 2018.6.15.] [<u>개정 2021.00.00.</u>] 5. 석사·박사통합과정 : 8개 학기 <u>또는 4년</u> [개정 2018.6.15., <u>2021.00.00.</u>] 6. 의학대학원 및 치의학대학원 복합학위 과정 : 10개 학기[개정 2018.6.15.] <p>⑤ 다음 각 호의 휴학기간은 제4항 휴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군휴학 : 병역의무 기간이 포함된 학기. 다만, 종강일 후 입영 또는 복무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학기부터 휴학학기로 본다. 2. 창업휴학 : 2개 학기 <u>또는 1년</u> 3. 임신·출산휴학 : 2개 학기 <u>또는 1년</u> 	
---	---	--

간 서명	이사장 전수안 	이사 최창원 	이사 박현애 
------	---	---	--

4. 육아휴학 : 4개 학기 5. 질병휴학 : 4개 학기 6. 권고휴학 : 4개 학기 [신설 2018.6.15.]	4. 육아휴학 : 4개 학기 또는 2년 5. 질병휴학 : 4개 학기 또는 2년 6. 권고휴학 : 4개 학기 또는 2년 [신설 2018.6.15.] [개정 2021.00.00.]	
<신 설>	부칙 <제0000호, 2021.00.00.>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	-적용시기 명시

□ 심의결과

- 오세정 총장이 위 안건을 발의하고 김은미 교무처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, 참석이사 전원의 동의로 원안대로 추진함

4. 심의의결사항

제1호. 2020회계연도 서울대학교 종합재무제표(안)

□ 주요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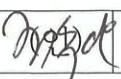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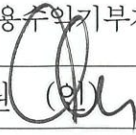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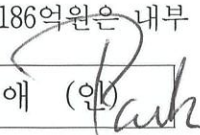
- 2020회계연도 종합재무상대표 요약(案)

(단위: 억원)

구 분	서울대	산학 협력단	(재)서울대 발전기금	단과대학 발전기금	종합재무상대표		
					2020년도	2019년도	증감
자산(A=B+C)	51,549 (100%)	5,484 (100%)	6,459 (100%)	1,898 (100%)	65,205 (100%)	60,736 (100%)	4,469 (7%)
현금및 현금성자산	2,984 (6%)	3,826 (70%)	410 (6%)	133 (7%)	7,354 (11%)	7,110 (12%)	244 (3%)
유형자산	47,000 (91%)	1,172 (21%)	254 (4%)	24 (1%)	48,450 (74%)	45,380 (75%)	3,070 (7%)
기타자산 ^{1) 2)}	1,565 (3%)	486 (9%)	5,795 (90%)	1,741 (92%)	9,401 (15%)	8,246 (13%)	1,155 (14%)
부채(B) ³⁾	3,839	2,618	182	7	6,628	6,345	283
자본(C) ^{2) 4) 5)}	47,710	2,866	6,277	1,891	58,577	54,391	4,186

1) 선급금, (장기)미수금, 투자자산 등

2) 기타자산 중 발전기금에서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사용수익기부자산(169억원) 등 186억원은 내부

간 서명	이사장 전수안 	이사 최창원 	이사 박현애 
------	---	---	--

- 거래에 해당하여 종합재무제표 작성 시 자본(전기이월운영차액) 등과 상계됨
- 3] 부채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이 아니며 정부출연금 수령분 등 예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금으로 지출이 예정된 금액이 회계 상 부채로 인식된 것임
- 4] 자본은 서울대 법인설립 시 정부로부터 양여받은 토지, 건물 등으로 구성되며 산학협력단 적립금, 발전기금 기본재산 등을 포함
- 5] 서울대는 당기에 건물 및 구축물 등을 양여·출연·기부받는 경우 기타기본금으로 표시하고 해당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기타기본금에서 직접 차감하는 것으로 회계 정책을 변경함

■ 2020회계연도 종합운영계산서 요약(案)

(단위: 억원)

구 분	서울대	산학 협력단	(재)서울대 발전기금	단과대 발전기금	종합운영계산서		
					2020년도	2019년도	증감
운영수익(A)	8,503 (100%)	6,754 (100%)	1,009 (100%)	216 (100%)	15,875 (100%)	15,500 (100%)	375 (2%)
등록금수입	1,838 (22%)	- (0%)	- (0%)	- (0%)	1,838 (12%)	1,828 (12%)	10 (1%)
정부출연금및 보조금 ^{1]}	5,046 (59%)	- (0%)	- (0%)	- (0%)	5,046 (32%)	4,510 (29%)	536 (12%)
산학협력수익 및지원금수익	- (0%)	5,656 (84%)	- (0%)	- (0%)	5,656 (36%)	5,398 (35%)	258 (5%)
기부금및 간접비수익	21 (0%)	1,005 (15%)	738 (73%)	97 (45%)	1,861 (12%)	2,362 (15%)	△501 (△21%)
기타수입 ^{2]}	1,598 (19%)	93 (1%)	271 (27%)	119 (55%)	1,474 (8%)	1,402 (9%)	72 (5%)
운영비용(B)	8,066 (100%)	6,576 (100%)	806 (100%)	151 (100%)	14,963 (100%)	14,524 (100%)	439 (3%)
인건비	4,784 (60%)	2,992 (45%)	271 (34%)	4 (3%)	7,788 (51%)	7,318 (50%)	470 (6%)
관리운영비 ^{3]}	2,185 (27%)	746 (11%)	323 (40%)	57 (38%)	2,938 (20%)	2,934 (20%)	4 (0%)
연구비	273 (3%)	2,482 (38%)	55 (7%)	34 (22%)	2,844 (19%)	3,006 (21%)	△162 (△5%)
학생경비	792 (10%)	353 (6%)	132 (16%)	13 (9%)	1,290 (9%)	1,186 (8%)	104 (9%)
기타비용	32 (0%)	3 (0%)	25 (3%)	43 (28%)	103 (1%)	80 (1%)	23 (29%)
당기운영차익 (C=A-B) ^{4]}	437	178	203	65	912	976	△64

1] 정부출연금은 4,844억원이 세입 되었으며 이 중 건물취득에 사용된 금액은 재무상태표 해당 자산에 차감 표시되어 운영계산서 상에는 4,572억원으로 계상(보조금 수입 474억원)

간 서명 | 이사장 전수안 (인) | 이사 최창원 (인) | 이사 박현애 (인)

- 2] 서울대 기타수입 중 607억원은 산학협력단, 발전기금회계 전입금 등으로 개별 재무제표에만 계상되며 종합재무제표 작성 시 상계됨
- 3] 시설관리비, 일반관리비, 운영비(감가상각비) 등
- 4] 서울대는 당기에 건물 및 구축물 등을 양여·출연·기부받는 경우 기타기본금으로 표시하고 해당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기타기본금에서 직접 차감하는 것으로 회계 정책을 변경함

□ 심의결과

- 오세정 총장이 위 안건을 발의하고, 김용진 기획처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, 마광열 감사의 의견을 청취하고 참석이사 전원의 동의로 원안대로 심의·의결함

제2호.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이사 선임(안)

□ 주요내용

- 한호성 이사(평의원회 추천 이사)의 임기가 2021. 11. 23.자로 만료되기에 후임 이사 선임

□ 심의결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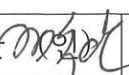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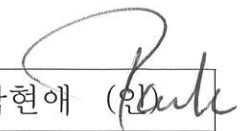
- 전수안 이사장이 위 안건을 발의하고 김용진 기획처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, 평의원회에서 추천한 정철영(농업생명과학대학) 교수에 대한 투표를 거쳐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후임 이사로 선임함

5. 논의사항

제1호. 이사 후보군 추천

□ 주요내용

- 이사회 구성 절차, 구성 근거, 관련 규정, 2017~2020년 이사후보초빙위원회 추천 현황 등 검토
- 2021년 제1차 이사회 운영소위원회 논의 내용 공유

간 서명	이사장 전수안 	이사 최창원  (원)	이사 박현애  (안)
------	---	---	--

□ 논의결과

- 전수안 이사장이 위 안건을 발의하고, 김용진 기획처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이사 후보군 추천에 대하여 논의함
- 이사회가 이사 후보군 추천 관련 사항을 이사후보초빙위원회에 일임하기로 함

6. 기타사항


제1호. 다음 이사회 개최 시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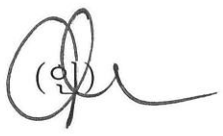
- 2021년 제7차 이사회를 2021. 11. 29.(월) 오후 2시에 개최하기로 함


7. 폐회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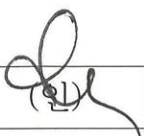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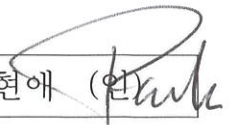
- 보고 및 논의를 종료하고, 이사장이 오후 5시 30분에 폐회를 선언함

상기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함

이사장 전수안 

이사 최창원 (인) 

이사 박현애 (인) 

간 서명	이사장 전수안 	이사 최창원 (인) 	이사 박현애 (인) 
------	---	---	--